

여비규정

제정일 : 2002. 9. 1.

개정일 : 2023. 12. 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숙박비,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활동비, 식비로 구분한다.

1. 숙박비 :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2. 운임 : 여행 목적으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3. 활동비 :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4. 식비 :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전문개정 2023. 12. 26.]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여비는 [별표 1, 2]의 여비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7. 29, 2014. 11. 25, 2019. 1. 23, 2023. 12. 26.>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본교를 기준으로 출장지까지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제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 12. 26.>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직무로 소요되는 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여행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초과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된다. <개정 2023. 12. 26.>

② 열차 및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 편성 시간 제약의 사유로 부득이 출장기간의 전일 출발이나 후일 도착 시 여행일수는 신고된 출장기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26.>

제6조(여비의 변경) ① 여행 도중 여비에 관한 규정이나 직위 또는 호봉의 변경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한다. 다만, 당해 교직원이 이동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한다.

②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금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제7조(근무지 외의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여행시의 여비) 삭제 <2023. 12. 26.>

[중전 제7조는 제8조제2항으로 이동 <2023. 12. 26.>]

제8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개인적 일로 근무지 또는 출장지 이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직접 여행할 경우에는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 7. 29, 2023. 12. 26.>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지역으로의 당일 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표1]과 같이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 교무위원이 수도권 지역으로 당일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1]과 같이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 7. 29, 2023. 12. 26.>

④ 삭제 <2023. 12. 26.>

⑤ 숙박비는 1인 1실 기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산 등을 고려하여 2인 1실로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국내·외 구분없이 2인 1실 기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 23, 2023. 12. 26.>

⑥ 학회, 세미나 또는 협의회 등에 참석 시 개최기관이 지정하거나 추천한 장소에 숙박할 경우 기준액을 초과하는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2023. 12. 26.>

⑦ 학회, 세미나 또는 협의회 참석 시 식비는 출장기간 중 제공되지 않는 식수를 기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2023. 12. 26.>

⑧ 신입생오리엔테이션 및 교내수련회, 학생해외활동의 목적으로 여행하거나 국내·외 장기여행 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여비를 산정할 수 있다. <삭제 2014. 11. 2> <개정 2023. 12. 26.>

⑨ 삭제 <2023. 12. 26.>

⑩ 2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동행자 중 상위 직급을 적용받는 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총장과 운전기사는 따로 지급한다. <신설 2019. 1. 23>

제2장 운 임

제9조(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 운임은 철도 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 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 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제10조(운임의 지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은 [별표 1, 2]의 여비정액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1. 7. 29, 2014. 11. 25>

제11조(운임지급의 예외) <개정 2023. 12. 26.> ① 출장지 현지에서 연속된 출장 업무로 인해 사전 신고된 다른 출장지로의 추가적인 이동이 필요할 경우 현지운임 1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단, 출장지 구분은 시, 군 단위로 하며 수도권 지역의 당일 출장은 제외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운임을 정액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사후 지급할 수 있다.

③ 학교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14조에 따른 활동비의 반액을 지급하며, 행사 개최 또는 참석 등의 사유로 학교 차량을 운행하는 별도의 직원이 출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숙박비, 식비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제12조(실비지급) 삭제 <2023. 12. 26.>

[중전 제12조는 제11조제2항으로 이동 <2023. 12. 26.>]

제13조(지급의 제한) 삭제 <2023. 12. 26.>

[중전 제13조는 제11조제3항으로 이동 <2023. 12. 26.>]

제3장 숙박비, 활동비, 식비

제14조(지급) ① 숙박비, 활동비, 식비는 [별표 1, 2]의 여비정액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 11. 25, 2019. 1. 23, 2023. 12. 26.>

②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 여행기간 중에 있어서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6.> <항 번호 변경 2023. 12. 26.>

③ 활동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1. 7. 29> <항 번호 변경 2023. 12. 26.>

제4장 퇴직자, 사망자 등의 여비

제15조(여행 중 퇴직, 휴직된 자의 여비) 출장 여행 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근무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자이거나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6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 ①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급된 여비를 환수하지 않으며, 미지급된 출장비는 그 유족에게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준의 준용)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지급금액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별표 2]의 개정 내용은 규정 개정일 이후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 : 원)

직급	운임				활동비 (1일 기준)	숙박비 (1박 기준)	식비 (1일 3식 기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총 장	정액 (특실)	정액 (1등급)	1등정액	정액	40,000	실비	30,000
부총장	정액 (특실)	정액 (1등급)	2등정액	정액	30,000	실비	30,000
교무위원	정액 (특실)	정액 (1등급)	2등정액	정액	25,000	100,000	30,000
교원, 직원	정액 (특실)	정액 (1등급)	2등정액	정액	25,000	100,000	30,000
연구원	정액 (일반실)	정액 (2등급)	2등정액	정액	20,000	80,000	25,000

※ 항공운임: 1등 정액: Business Class
2등 정액: Economy Class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요금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인·허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요금은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3. 국·내외 출장의 경우 교무위원은 특별활동비 10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4. 본교에서 직선으로 20km 거리 이내에 행정관청이 소재하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 2조에 따른 시, 군, 자치구) 당일 출장시 12,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를 제외한 서울특별시 전체,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5. 4항 외 수도권 지역의 당일 출장인 경우 24,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 도서 지역 등 별도의 교통수단이 필요한 경우 순로에 기반한 추가 운임을 실비 지급할 수 있다.
6. 학회, 세미나, 협의회 개최 장소 또는 지정 숙박 장소에서 투숙할 경우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이 이를 사전에 증빙하여야 한다.

[별표 2] 국내여비 정액표

[별표2]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 미 달러화)					
직급	지역	항공운임	활동비 (1일 기준)	숙박비 (1박 기준)	식비 (1일 3식 기준)
총장	가	1등정액	60	471	186
	나	1등정액	60	422	136
	다	1등정액	60	271	102
	라	1등정액	60	216	85
부총장	가	2등정액	50	389	160
	나	2등정액	50	289	120
	다	2등정액	50	215	90
	라	2등정액	50	161	73
교무위원	가	2등정액	50	389	160
	나	2등정액	50	289	120
	다	2등정액	50	215	90
	라	2등정액	50	161	73
교원	가	2등정액	50	285	160
	나	2등정액	50	210	120
	다	2등정액	50	180	90
	라	2등정액	50	140	70
직원	가	2등정액	35	223	107
	나	2등정액	35	160	78
	다	2등정액	35	130	58
	라	2등정액	35	85	49
연구원	가	2등정액	30	176	81
	나	2등정액	30	137	59
	다	2등정액	30	106	44
	라	2등정액	30	81	37

1. 항공운임: 1등 정액: Business Class
2등 정액: Economy Class
2. 환율은 출장비 신청일의 외국환율고시 ‘현찰살 때’ 기준을 적용한다.
3. 8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직항) 시 항공운임은 1등 정액으로 정산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이를 사전에 증빙하여야 한다.
4. 학회, 세미나, 협의회 개최 장소 또는 지정 숙박 장소에서 투숙할 경우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이 이를 사전에 증빙하여야 한다.

등급	지역별	국가/도시명
가	대도시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오스트레일리아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안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가나, 모로코

다	아시아주 ·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스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피지
	남 · 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중동 · 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수단
라	아시아주 · 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필리핀, 통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남 · 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중동 · 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마다가스카르

※ 위 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위 표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